의 안 번 호	제183호
의결 연월일	2022. 12. 5.

#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11월 14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11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12월 5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홍보협력실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답례품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6조)
-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1조)
-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(안 제2조, 제12조 ~ 제21조)
-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(안 제22조 및 제2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